

제209회 임시회  
2003. 2. 11(화)

# 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(안)

전문위원 임석규

# 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- 2003년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

○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## 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

- 동 계획(안)의 수립·시행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
  -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·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
  - 관할 시장·군수, 지역주민, 보건의료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·군 의회에 의결을 거쳐 수립한
  -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을 **도 의회에 의결**을 받기 위함입니다. (바로 보건복지부에 제출 할 것임)

##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
- 계획 시행기간은 **4년**으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이며
  - ※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: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
- 주요 내용으로는
  - 보건소의 업무의 현황과 년도별 추진계획
  -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의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
  - 노인전문병원건립(2개소)
  - 암 등 질병조기발견사업(2,794명)

-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(89개소) 설치 운영
- 보건진료소 신축(년 5개소)
-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시범설치 운영(5개소) 등입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.

- 금번 제출된 동계획(안)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보건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 되었다고 사료됩니다.
- 그러나, 도민 전체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임을 고려해 볼 때
  - 시와 군별의 인구 비례에 맞는 각종 보건의료 기관의 설치 등 지역안배와 형평성 여부
  -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 보건진료소 등 설치여부는 시·군 의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,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시 이를 도에서 조정권고하여 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
  -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전문병원(특히 한방진료실)의 확충 및 의료수가를 낮추어 이용을 보다 확대 할 수 있는 방안
  - 암, 에이즈 등 난치병 검진사업 확대로 이용의 극대화
  - 날로 심화되고 있는 중·고생들의 흡연 및 음주 예방대책과
  - 동 계획안의 법령 제출시기를 일실한 이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동 계획(안)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